

2021년 3월 개정편집판

학교생활인권규정

즐거운 학교 건설



꿈과 사랑이 있는 학교

용문고등학교
yongmun high school

목 차

1.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	3
제2장 학생의 생활 -----	3
제1절 권리와 책무 -----	3
제2절 용의복장 -----	4
제3절 교내생활 -----	5
제4절 교외생활 -----	10
제5절 정보통신 -----	10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	11
제1절 총칙 -----	11
제2절 구성 및 운영 -----	11
제3절 학생의 선도 -----	12
제4절 심의 및 통지 -----	15
제4장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 -----	16
부 칙 -----	17
<별첨1> 【교복 제조 사양서】 -----	19
<별첨2> 【학생 선도기준】 -----	21

2. 학생자치회 규정

제1장 총칙 -----	24
제2장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 -----	24
제3장 학생회 선거 규정 -----	26
제4장 반장·부반장 선거 규정 및 학급회 구성 -----	27
제5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개정 -----	29
부 칙 -----	29

1. 학교생활인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용문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학교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태도 및 준법습관의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정근거】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0조, 제31조 및 경기도인권조례, 학칙 및 학업성적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2장 학생의 생활

제1절 권리와 책무

제4조【기본적인 권리】

- ① 차별, 괴롭힘, 편견이 없는 안전한 학습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
- ②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중받을 권리
- ③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
- ④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
- ⑤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교과목의 채점기준, 평가결과를 알 권리
- ⑥ 본인의 학사기록을 검토할 권리
- ⑦ 학교의 학생 기록 취급에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 ⑧ 성장과 진로 직업 개발에 대한 상담과 조언을 받을 권리

제5조【표현 및 개인의 자유에 대한 권리】

- ① 학생회 대표 조직을 구성하고 홍보하며 참여할 권리
- ② 학교의 지침 내에서 학교내 게시판에 게시물을 붙일 권리
- ③ 학교 방침 범위 내에서 자신의 복장을 결정할 권리
- ④ 학교 내에서 사용이 허용된 개인소지품을 소지할 권리
- ⑤ 부당하거나 무차별적인 몸수색 등의 검색을 받지 않을 권리
- ⑥ 체벌을 받지 않을 권리
- ⑦ 충성맹세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제6조【공평하게 대우받을 권리】

- ① 학교 규칙과 규율 규정 및 규범을 제공받을 권리
- ② 적절한 행동과 선도 받는 행동에 대해 알 권리
- ③ 전문적 지식을 갖춘 교원에게 상담 받을 권리
- ④ 교칙 위반 행위에 대해 내려지는 처분과 결과를 알 권리
- ⑤ 자신에게 부과된 선도 조치의 이유를 통보 받을 권리
- ⑥ 학교규칙 위반으로 선도시 법적인 절차를 받을 수 있는 권리
- ⑦ 선도 조치와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절차를 알 권리
- ⑧ 자신의 생활 기록에 입력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

제7조【학생의 책무】

- ① 공휴일 및 학교에서 지정한 공휴일 이외의 일자는 출석하여 소정의 수업을 받아야 하며, 시간을 엄수해 등교하고, 모든 교육 영역에서 성취도 향상에 최선을 다할 책임
- ② 학습자료를 갖추어 수업에 임하고 교과서 및 교재교구를 조심스럽게 다룰 책임

- ③ 교실 및 학교 건물 출입시 학교 규정을 준수할 책임
- ④ 휴기, 불법 약물, 술, 담배 등이 없는 학교환경 유지에 동참할 책임
- ⑤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과 다른 학생의 학습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
- ⑥ 타인의 인격을 존중하고 동등하게 대하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을 책임
- ⑦ 학교 자산을 보호하고, 타인의 물품 또는 공동소유물을 존중해야 할 책임
- ⑧ 연령, 인종, 성별, 종교, 장애 등에 관계없이 타인을 예의바르고 정중하게 대하며 비방하지 않을 책임
- ⑨ 타 학생과 교직원에게 예의바르고, 진솔하며 협조적인 자세로 행동할 책임
- ⑩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에 노력할 책임
- ⑪ 분쟁을 해결함에 극단적인 방법을 피해야 할 책임
- ⑫ 학생회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할 책임
- ⑬ 학생, 교직원과 의견 교환 시 저속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지 않을 책임
- ⑭ 교육과정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할 책임
- ⑮ 질서 있게 모임을 갖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학생의 결정을 존중할 책임
- ⑯ 체육실, 특별실 내에서 복장과 행동에 대해 정해진 지침에 따라야 할 책임
- ⑰ 학교 규율 규정을 숙지하고 학교 규칙과 규범을 준수할 책임
- ⑱ 안전하고 학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인 소지품만 학교에 가져올 책임
- ⑲ 학교와 관련된 사항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전달해야 할 책임

제2절 용의복장

제8조【정의】 학생의 용의복장은 교복, 두발, 명찰, 색조화장 등 학생의 용의복장에 관련된 것을 총칭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학생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와 학교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

제10조【용의 사항】

① 복장

1. 학교에 등교하거나 하교 할 때에는 지정된 교복을 착용해야 한다.
2. 교복은 동복과 하복 및 춘추복으로 구분하고, ‘<별첨1> 【교복제조 사양서】’에 지정된 교복을 착용해야 하며, 여학생은 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3. 교복 착용은 학교장이 재량으로 그 시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4. 동복

- (1) 남학생의 상의는 감색 모직재킷, 회색 또는 감색 모직조끼, 흰색 줄무늬 와이셔츠, 감색 카디건, 감색 넥타이로 하며, 하의는 회색 바지를 착용한다.
- (2) 여학생의 상의는 감색 모직재킷, 체크무늬 조끼 또는 감색 카디건이나 회색 또는 감색 니트 조끼, 흰색 블라우스, 감색 넥타이로 하며, 하의는 감색 치마 또는 회색 바지를 착용 할 수 있다.
- (3) 동절기에 외투를 착용할 수 있다. (단 와이셔츠나 블라우스 대신 목 폴라 티셔츠를 착용할 수 있다.)

5. 춘추복은 남·녀 학생 모두 동복에서 상의 곤색 모직재킷을 탈의하는 것으로 한다.

6. 하복

- (1) 남학생은 반소매 흰줄무늬 와이셔츠에 감색 바지를 착용한다.
- (2) 여학생은 반소매 흰색 블라우스에 주름 스커트 또는 감색바지를 착용한다.
- (3)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티셔츠 및 반바지를 착용할 수 있다.

7. 남·여학생 구분 없이 교복을 착용할 수 있다.

- ② 명찰은 교내에서 착용하며, 호주머니형 또는 탈부착형(아크릴 소재)을 사용한다.
 - 1. 크기는 가로 7Cm, 세로 2.5Cm로 한다.
 - 2. 색상은 아래의 사항을 순회한다.(2015년 기준)
 - (1) 곤색 바탕에 흰 글씨
 - (2) 녹색 바탕에 노랑 글씨
 - (3) 자주색 바탕에 노랑 글씨
- ③ 두발길이, 염색, 파마
 - 1. 두발 길이는 제한을 두지 않으나, 염색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단, 자연발생적인 색상, 새치, 곱슬 등은 예외로 한다.
 - 2. 파마는 머리 하단에 C컬, S컬, 자연스러운 웨이브 등과 같이 부분적인 것만 허용하며, 강한 웨이브를 동반한 레계, 스피스왈로와 같은 파마는 허용하지 않는다.
- ④ 장신구는 종교적이며 일반적인 반지, 목걸이, 귀걸이를 착용할 수 있다. 단, 귀걸이는 귓볼에 붙은 형태만 허용하며 한쪽 귀에 2개까지만 할 수 있고, 링 또는 치렁치렁한 형태의 귀걸이, 피어싱 등은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 ⑤ 기타
 - 1. 수업 중 화장 행위, 타투(문신), 스크래치는 일체 허용하지 않는다.

제3절 교내생활

제1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초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를 만들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탐구하는 자세로 학력과 창의력을 기르고 교양을 높이기 위해 독서에 힘쓰며, 권장도서를 우선하여 독서한다.

제13조【시설이용 및 환경】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시설물과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고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 ③ 학생들은 학교시설 및 교구 교재에 낙서하지 않아야 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직원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② 학교 일과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제15조【양성평등관계】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교우간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 ① 학생회 임원은 성별 구분 관계없이 조건에 부합하면 입후보 할 수 있으며, 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남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급회의나 학생회 임원회의에서 특정 성(性)의 주도적 역할이나 보조적 역할에 대한 의식을 갖지 않고, 남녀 학생이 협력하여 자주적·민주적인 토의절차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 ③ 클럽활동 모집과 활동 시 남녀 구별이나 특정 성(性)에 대해 우선권이나 기득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한다.
- ④ 특정 성(性)의 무시나 비하, 성 고정관념과 편견을 드러내는 발언을 삼가도록 한다.
- ⑤ 상대방의 불쾌한 행동에 대하여 확실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심할 경우 담임교사나 상담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제16조【폭력예방】

- ①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신체 및 정신적 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즉시 알린다.

1. 학교폭력신고 117
2.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3. 경찰청 범죄신고 112
4. 청소년보호위원회 청소년도우미 1388
5. 교육청이나 학교의 홈페이지 또는 소리(신고)함

③ 괴롭힘을 당한 학생은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혹은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익명의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다.

제17조【동아리활동】 방과후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클럽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계획을 작성해서 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④ 학생은 클럽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제18조【여가활동】 학생들의 비행 및 교내폭력을 예방하고 나아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은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하며,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한다.
- ② 여가시간에는 특별실(전산실, 음악실, 체육관, 도서관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③ 특별실 담당 학생을 반별 1명씩 지정하여 순번제로 관리 및 청소를 한다.
- ④ 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9조【학급내 봉사활동】 학급내 봉사활동 학생의 근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제 행사, 조회, 종례, 기타 일과에 관하여 담당교사의 지시를 받고 학급에 전달 또는 시행에 필요한 준비를 철저히 한다.
- ② 학급환경 정돈, 출결사항 점검, 학급분위기 조성에 노력 봉사한다.
- ③ 청소구역의 청소상태를 확인한다.
- ④ 학급비품 관리와 파손에 주의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교사에게 즉시 보고한다.
- ⑤ 학급내 봉사활동은 다른 학생보다 일찍 등교하여 임무에 임하고 종례 후 정리정돈을 한 후에 하교한다.
- ⑥ 학급내 봉사활동의 범위는 담임교사가 조절할 수 있다.

제20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 및 학생인권부 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입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② 전체 집합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1조【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산정한다.

-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 ② 학적변동(면제·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 ③ 학적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 ④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예 2학년 4.15 자퇴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4.15까지 수업일수는 제외)
- ⑤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본교 당해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미만이 될 경우에는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0조 제2항 참조)

제22조【결석일수의 산정】

- ①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자퇴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 ~ 4.15.까지 결석일수는 제외)

제23조【출석 인정 결석】

- ①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② 병역관계 등 공적업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예 : 재학 중 소년심사분류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 ③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산업체 현장체험학습)참가, 훈련 참가, 학교(도·농)간 교류학습(위탁교육),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20일 이하(공휴일, 방학, 개교기념일 제외, 횟수 제한 없음)를 원칙으로 하나,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한 초과일은 학교장의 판단에 따라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 (2) 학교에서는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하는 무분별한 체험학습을 지양하도록 허가 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시행한다.
 - (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활동 유형, 인정 절차(신청서, 보고서 제출시기 등), 인정 범위 등을 학칙으로 정하여 민원의 소지를 최소화 한다.
 - (4)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 (5) 학교장 허가 현장 체험학습의 내용 및 절차는 [표1]과 같이 한다.

[표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종 류	내 용	절 차
학교장 허가 현장체험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여행 ○ 경조사 참석 ○ 친·인척 방문 ○ 견학 활동 ○ 각종 체험 활동 ○ 기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서식1> 제출 (보호자 신청) ○ 신청서 승인(학교장) ○ 현장체험학습 실시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서식2> 제출 ○ 출석 처리 결정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 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⑥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표2]와 같이 한다.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015.3.15.)

[표2]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경우 경조사의 대상과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2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이외의 경조사일수는 원 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 ※ 경조사 사안 발생일 전·후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도 가능 일수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음.
- ※ [표2]의 경우 이외의 부모 및 조부모의 재혼, 칠순, 팔순, 탈상, (외)백·숙부·모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일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⑦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 보호) 제1항의 조치,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에 따른 결석
- ⑧ 생리통으로 인하여 출석이 어려운 여학생으로 확인되어, 월1일(단, 지각, 조퇴, 결과를 합산하여 3회를 출석인정 1일과 동일하게 간주)에 한하여 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의 소견서, 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만 결석 인정
- ⑨ 건강장애로 선정된 병원학교 수업참여(학교장은 '병원학교 출석 확인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 및 교육계획 기간 내에 화상강의(학교장은 '개별화 교육계획'과 '화상강의 출석 확인서'를 근거로 출석 인정)를 이수한 경우
- ⑩ 건강장애 선정대상자는 아니나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화상,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 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에 대해, 치료기간 중에는 병원학교 수업참여 또는 화상강의를 이수하도록 교육청이 허가하고 이에 따라 화상강의를 이수한 경우
- ⑪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특별준수사항)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교육,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 ⑫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출석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24조【질병 결석】

- ①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②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학급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③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이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소속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25조【미인정결석】

- ①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에 연행 되어 피의자 조사, 유치장, 구치소 등에 수감 등)
- 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 제4호의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 ④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항 제6호의 출석정지 기간

제26조【기타 결석】

- ①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②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 ③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7조【지각·조퇴·결과·외출】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를 경유하여 학년 부장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 ① 지각은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조퇴는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결과는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이다.

1. 지각

- (1) 수업이 진행되는 주중은 1교시 수업이 시작된 후부터 정규 일과 시간표 상의 수업이 종료하기 전까지 등교하는 경우. 단,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정규 일과 시간표 상의 1교시 이후부터 각종 행사가 종료하기 전까지 등교하는 경우
- (2) 시험시간 중에는 1교시 시험이 시작된 후부터 당일 시험이 종료되기 전까지 등교하는 경우 등
- (3) 1교시 시험이 시작된 후에 등교하는 경우(지필평가 기간 중) 등

2. 조퇴

- (1) 정규 일과시간표 상의 수업 종료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 (2) 각종 행사나 교육과정 운영 종료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 등

3. 결과

- (1) 상담 및 다급한 생리현상 해소 등 교과담당 교사가 인정 할 있는 사안이 아닌 사유로 교과(과목) 수업 시작 5분 이후에 입실하는 경우
- (2) 수업진행시 지나치게 소란하여 수업 방해를 하거나 해당 교과를 수강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 (3) 교과담당 교사의 허락을 얻지 않고 수업 중 교실을 나가는 행위
- (4) 각종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담임(담당)교사의 허락 없이 행사 장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등

- ② 위 제27조 6항(경기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2015.3.15.)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③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 ④ 같은 날짜에 지각, 결과, 조퇴 등이 발생한 경우

- 1.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와 질병지각, 질병조퇴, 질병결과가 다중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미인정을 우선하며, 먼저 발생한 미인정 사항을 적용한다.
- 2. 질병지각, 질병조퇴, 질병결과가 다중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질병사항을 적용하거나, 담임교사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 같은 날짜에 결과 1회 이상은 결과 1회로 처리한다.

- ⑥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예 : 2학년 4.15. 자퇴 후, 다음해 2학년 3.20. 재입학(편입학)일 경우 원적교의 3.20. ~ 4.15.까지 각 횟수는 제외)

제28조【안전지도】 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②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 ③ 매월 4일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④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⑤ 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반을 운영한다.
- ⑥ 각급학교의 ‘현장교육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29조【진로지도】 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 ①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 ②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 ③ 매월 1회 이상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이수케 한다.
- ④ 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기별로 교육을 실시한다.
- ⑤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⑥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각 월 1회 이상 실시한다.
- ⑦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교육 및 관리지도(필요시 건전한 아르바이트 알선 및 직업 윤리교육 등)

제4절 교외생활

제30조【기본품행】 학생의 교외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이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⑥ 교통규칙, 교통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 ⑦ 술, 담배, 본드, 마약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⑧ 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이나 불법 취업을 금한다.

제31조【현장실습 준수사항】

- ① 기업체나 행정 관서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한 때에는 사규나 관서의 규칙 등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 1. 기업체(관서)의 복무규정을 엄수한다.
 - 2. 현장실습의 장을 학교수업의 연장으로 여기고 무단이탈, 미인정 결석 등 학생의 본분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3. 현장실습 기간 중 기업체(관공서)의 기물파손 등 물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진다.
 - 4. 기업체에서 현장 실습 중 학교의 허가 없이 타 기업체로 이동하지 못하며 실습일지 및 근무상황 보고서를 학교장이 요구하는 시기에 제출해야 한다.
 - 5. 현장 실습 중 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 6. 각종 자격시험 등을 응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업체의 장에게 허가를 얻어 참여한다.
 - 7. 현장실습 기간 중 출근은 학교 출석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32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 ④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및 불법 취업
- ⑤ 기타 학생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제33조【교외생활지도】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 및 공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와 선도를 한다.

제5절 정보통신

제34조【사이버 생활】 예절바르고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35조【통신기기 관리】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① 교내에서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을 자제하며, 타인에게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고, 통신예절을 지키도록 한다.
-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 ④ 수업시간 중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
- ⑤ 휴대폰 및 전자기기 등은 조회 시간에 담임교사가 수거하여 보관하며 종례 시간에 돌려준다. (단, 학생의 동의 후에 수거할 수 있으며, 종례전이라도 필요시 담임교사의 동의하에 사용이 가능함.)
- ⑥ 시험시간 중에 휴대전화, 전자사전, MP3 등의 통신기기 사용을 금지하며, 위반시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제3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절 총칙

제36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2절 구성 및 운영

제38조【기능 및 구성】

- ① 학생의 생활지도 전반(학생생활, 학교폭력 예방,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고(이하 “위원회”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생선도에 관한 사항
 - 2. 학생인권보호 및 학생선도에 관한 기본 계획
 - 3.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한다.
- ③ 교감은 위원장이 되며, 본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④ 인권안전부장은 부위원장이 되며,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위원장의 유고시 그 임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회 위원은 교무부장, 진로상담부장, 각 학년부장, 생활지도 전담교사로 하며 생활지도 전담교사를 주무로 한다.
- ⑥ 본교 교직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교내외 생활을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39조【위원회의 임기와 운영】

-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학생선도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한다.

1. 위원회는 위원 2/3이상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2. 해당 학생 담임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절차의 오류 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상황의 변화가 예상될 때는 학교장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4.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5. 위원회 심의 내용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한다.
- ④ 학교장은 인권안전부 생활지도담당 교사를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 ⑤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⑥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0조【회의소집】 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①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② 학생인권안전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절 학생의 선도

제41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장 제31조(학생의 징계 등)”에 의거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위반한 학생을 올바르게 선도하기 위함이다.

제42조【선도의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한다.

- ① 학생선도는 학칙에 의거하여,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② 학생선도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두고, 회복적 정의의 관점에서 시행한다.
- ③ 학생선도는 해당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여 시행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선도를 위하여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구체적 지도 방법은 경기도교육청 『체벌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 친화적 학생 생활 지도 프로그램』을 활용한다.

제43조【사안 설명 및 의견 진술권부여】

- ① 위원회는 심의 전에 담임교사 및 담당교사로부터 사안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심의 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내용증명 또는 진술서 등의 의견 진술권을 부여해야 한다.
- ② 학생 또는 학부모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내교 통지서를 발송하며 3회 발송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44조【선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도를 할 수 있으며(초·중등교육법 제31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선도의 종류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단 선도는 학습권을 보장하여 정규수업 이후에 진행하며, 2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학교내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2시간 이내, 총 10 시간 이내)
- ② 사회봉사는 5일 이내의 기간(1일 5시간 이내, 총 25 시간 이내)
- ③ 특별교육이수는 특별교육 이수기관의 교육과정에 의하며, 5일 이내(1일 5시간 이내)로 정한다.
- ④ 출석정지는 최대 3회로 하며, 1회는 10일 이내,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⑤ 퇴학은 선도의 최종단계로 한다.

제45조【선도의 방법 및 내용】 학생들의 기본적인 생활습관 형성 및 올바른 인성형성 위하여 운영한다.

- ① 학교내 봉사는 교내에서 생활지도담당교사 또는 담임교사 및 기타 지도교사 등이 다음의 봉사활동을 지도한다.

1. 학교 환경미화 활동
 2. 교재 교구 정비
 3. 교내 도서관 도서 정비
 4. 기타 지도교사의 지도에 따른 봉사활동 및 교육활동으로 독서활동, 과제활동, 쓰기활동, 상담활동, 청소활동, 심성수련을 위한 활동(색칠하기) 등
- ② 사회봉사는 학생을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1. 지역 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 보조 등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 : 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4. 사회봉사 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③ 특별교육이수는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경기도교육감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1.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특별 교육과정 이수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단체의 특별 교육과정 이수(금연학교, 청소년 상담소 등)
 3.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허가한 특별교육 과정의 이수(약물, 마약, 환각제, 알콜중독 치료 등)
 4. 행동과 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심리치료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교육 이수
 5. 부적응 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의 교육이수
 6. 상담자원봉사, 사회복지사 등과 연계하여 1:1로 상담치료 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 교육 이수
 7. 특별교육 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한다.
- ④ 출석정지는 선도 처분된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할 수 없다.
1.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퇴학처분 시에는 해당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다른 학교, 대안학교, 산업체학교, 사회교육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할 수 있다.

제46조【퇴학처분 전 조치】

-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가정학습기간 이후 대상 학생이 충분히 반성하고, 행동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퇴학 처분을 철회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47조【선도의 세부사항】 징계의 세부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으며, 품행, 준법, 수업방해, 근태, 약물, 흡연, 풍기문란, 금품갈취, 집단모의 등의 구체적인 학생사안은 ‘<별첨2> 【선도기준】’에 따라 시행한다.

- ① 학교내 봉사
 1. 수업 준비, 청소, 기타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3. 결과, 조퇴, 외출을 무단으로 행한 학생.
 4. 흡연, 음주를 행한 학생.
 5.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6. 교육적 목적외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 (문자보내기, 통화하기 등).
 7.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 ② 학교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조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이 월 9회 이상인 학생.
3. 고사시 미인정 결시를 한 학생.
4.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 한 학생 (해당 과목 “0”점 처리).
5.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 한 학생.
6. 무단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학생.
7. 도박 또는 도박과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 (판치기 포함)
8.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학생.
9.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취한 학생.
10. 불법 취업을 한 학생.
11.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학생.
12. 등·하교 시 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에 차량을 운전한 학생 또는 전동 장비*를 운전한 학생
* 전동 장비 :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13. 남의 물건을 훔친 학생.
14.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가 재차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학생.
15. 기타 법령 또는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되었거나 판단되는 행위를 한 학생.
16.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③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 이수

1.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선동한 학생.
2. 선도중의 학생이 선도지도에 불응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이 월 15회 이상인 학생.
4. 검찰에 입건되거나 선도 조건부 석방된 학생.
5.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6. 시험을 거부한 학생.
7. 음주 및 흡연시 환각제 등을 사용한 학생.
8. 부당하게 금품을 갈취한 학생.
9.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1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11. 불법 소프트웨어 판매하거나 복제하여 판매한 학생.
12. 채팅 원조 교제를 한 학생.
13.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을 받고 재차 학교내 봉사 이상의 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을 행한 학생.
14.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④ 특별교육 이수 또는 출석정지 처분

1.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이 월 21회 이상인 학생.
2. 사회봉사 지도를 받고 재차 사회봉사 지도에 해당하는 사안을 행한 학생.
3.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⑤ 출석정지 및 퇴학 처분

1. 형법상 유죄로 결정된 학생.
2.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3.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학생.
4. 특별교육 이수 처벌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특별교육 이수 처벌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5. 학교 질서를 문란 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집회를 꾀한 학생.
6. 시험 문제를 누설 또는 문제지를 사전에 절취한 학생.

7.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집단 행동할 것을 선동한 학생.
8. 교권을 모독한 학생.
9.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 결석과 미인정 지각이 월 27회 이상인 학생.
10. 이상 각 항과 상응하는 행위를 한 학생.

제4절 심의 및 통지

제48조【선도 절차】 학생선도 사안에 대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다음 절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다.

- ① 본인의 진술서를 받고, 사안의 경위를 조사한다.
- ② 진술서와 경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최에 대한 결재를 득한다.
- ③ 선도 받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위원회 개최 일시를 서면으로 알리고 참석하게 한다.
- ④ 조사한 사안 경위서와 본인의 진술서 그리고 담임의견서를 토대로 위원회를 개최하며, 의결된 내용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시 학생과 학부모에게 진술권을 부여한다.
- ⑥ 학교장은 필요시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을 요구 할 수 있다.

제49조【선도 결정】

- ① 학생의 선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며,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실시한다.
- ② 학생 선도에 대한 사항 중 절차의 오류 또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재심을 요청할 경우 사안을 재심의 할 수 있다.
- ③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경우 각종 행사(현장체험학습 등)에 참여시킬 수 있고, 고사기간 중에는 고사에 응시하게 한다. 단, 해당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는 자동 연장된다.
- ④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선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기간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한다. 다만 출석정지 기간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란에 기재하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제50조【선도의 경감 및 가중】

- ① 도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수상하여 학교의 명예를 높인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선도의 경감을 심의할 수 있으며,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 ② 위원회는 선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진로상담교사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그 기간을 경감할 수 있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가중 할 수 있다.

제51조【선도결정 통보】

- ①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선도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도교육청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청구(퇴학의 경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징계기간 중 유의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 ② 선도결정 사항은 담임교사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지도 및 협조를 구한다.
-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재심의 신청】

- ① 선도처분을 받은 학생 및 보호자는 조치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는 재심의 신청서 서식을 제공하고, 신청 사유 등을 분명히 기재 하도록 안내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을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한다

제53조【재심의 절차】 위원회는 제50조 사항에 대하여 7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4조【재심의 청구】

- ① 학교장의 징계 처분 중 퇴학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 방법 등을 안내한다.
- ② 징계조정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제55조【선도의 해제】

- ① 위원회는 선도 기간 만료전이라도 개선의 정이 뚜렷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도를 해제할 수 있다.
- ② 선도해제의 대상이 된 학생은 선도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선도 기간 해제 전에 담당부서(학생생활인권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6조【사후지도 및 기타】

- ①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담당교사는 선도 기간이 해제된 학생을 수시로 지도하고, 그 지도 결과를 기록한다.
- ②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안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 후 시행한다.

제57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의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보상은 물론, 가정지도를 소홀히 한 책임을 지고 도의적으로 사죄해야 한다.

제58조【결과 처리.열람】

- ①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4장. 학교생활인권 규정의 제·개정

제59조【목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0조【적용 범위】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61조【용어의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선도, 선도 이외의 기타 지도 방법, 교내 교육·연구활동 보호 및 질서 유지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62조【위원회 운영】

-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에서 12인 사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 교원, 학부모, 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이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교원, 학생, 학부모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퇴직 요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교원, 학생, 학부모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⑥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⑧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63조【개정안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 (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회 대표 (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 5.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이 있는 경우
- ② 단,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5조【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66조【공포 및 정보 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67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68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제77조 6항 6을 삭제하여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제18조 1항 용의사항 중 두발규정을 개정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은 제23조 3항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내용을 개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제18조 2항 (1)두발규정, 4항 (3)복장규정의 내용을 개정 하고, 제42조 2항 임원선출 성적 규정을 삭제하여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이 규정은 제44조 대의원회구성 규정에 2항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08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은 제8조 학생선도심의위원회 2항 내용을 개정하고, 제77조 3항 7호, 4항 7호, 5항7호의 내용을 삭제 개정하여 200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개정】 이 규정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제3조, 제8조 개정, 제18조 1항 2호 개정 및 삭제, 4호,6호 개정, 7호및 8호삭제, 9호삭제개정, 제32조 4항 삭제개정, 제58조 개정,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제77조 6항4호 삭제 개정, 제85조 삽입 개정하여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개정】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에 따라 제3조, 제8조,제58조, 제67조, 제72조의 일부내용을 삽입 개정하여 2011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개정】 2016년 08월 24일 학교폭력 관련 내용으로 [별첨2] 학생선도기준의 10항, 64항, 65항, 66항, 69항을 삭제함.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제42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내용 내용을 개정(선도의 단계적 적용 내용 추가)하고, 2017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13조【개정】 이 규정 제14조의 용의사항과 별첨 #2 학생선도기준 37항, 46항, 47항, 48항, 49항, 53항을 수정하고,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개정】 이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제 27조 8항, 제 28조, 제 31조 1항, 2항, 3항, 4항, 제 47조 2항, 3항, 4항, 5항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동일하게 변경 및 추가하고, 제42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침 상한선 변경)하여 2019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제15조【개정】 이 규정 제 47조 선도의 세부사항 1항 학교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중 오토바이 승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차량 및 전동 장비 운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2019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 제16조【개정】 교육청의 인권규정 점검 결과 특별교육기간 명시, 서면 통보 등의 변경 요청으로 수정하고, 규정 제2장, 제3장, 제4장의 내용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준하여 내용을 추가 및 편집하여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제17조【개정】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3085(2021.2.26.)학교생활 인권규정 운영 안내 및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지침 알림에 의거 제45조 ②, ③, ④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제51조, 제52조 내용을 수정하여 2021년 03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별첨1 교복 제조 사양서

[동복 사양서]

재킷 + 상의(긴팔셔츠/블라우스) + 조끼(니트조끼/원단조끼) + 하의(바지/치마) + 넥타이												
남자 자켓		남자 와이셔츠		남자 니트조끼		남자 바지						
												
여자 자켓		여자 블라우스		여자 조끼(니트/원단)		여자 바지		여자 치마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원단	울/폴리	원단	폴리/레이온	원단	모/아크릴	원단	울/폴리	원단	울/폴리			
혼용률	울 80 폴리 20	혼용률	폴리: 65(남)/75(여) 레이온: 35(남)/25(여)	혼용률	니트조끼: 모50/아크릴50 원단조끼: 울60/폴리40	혼용률	울 60 폴리 40	혼용률	울 60 폴리 40			
색상	남	감청색	남	흰색바탕 하늘색 세로줄무늬	색상	남	회색	색상	남	밝은회색 (비둘기색)	색상	지정체크
	여		흰색	여		니트조끼: 남색 원단조끼: 치마 와 같음	여		짙은회색			
단추	남	앞쪽버튼 2EA	단추	화이트 7EA 소매부분 각 2EA	공통	무지 V넥	단추	사이즈조절기 후크 및 지퍼/ 단추 양쪽허리 (최측에는 조정 가능하게 밴드 부착)	단추	옆주머니 2EA	단추	옆주머니 2EA
	여	앞쪽버튼 4EA										
	공통	소매 각 2EA	기타	남,여:넥타이 (감청색)	주머니 와 배색	여학생 원단조끼 주머니2EA 단추3EA	주머니	옆주머니 2EA	안감	폴리 100		
주머니	2EA 안주머니 1EA											
안감	폴리 100											
비고	◎ 치마 및 바지 디자인 가. 치마길이 무릎선 나. 통줄이기 금지										지퍼타이	
	◎ 가디건(선택사항) 감청색/ 학교마크 : 모50 아크릴50										◎ 자켓 디자인 · 왼쪽가슴: 학교마크 · 단 추: 학교마크	
	◎ 명찰: 호주머니형(천 소재), 탈부착식(아크릴 소재) 가. 크기: 가로 7cm, 세로 2.5cm 나. 색상(2019학년도 기준): 1학년: 곤색 바탕에 흰색 글씨 2학년: 녹색 바탕에 노랑 글씨 3학년: 자주색 바탕에 노랑 글씨										특이사항	
											명찰부착방법	호주머니 형 탈·부착 식

[하복 사양서]

상의(반팔셔츠/블라우스 또는 생활티 남/여) + 하의(바지/치마(바지/치마/반바지))											
남자 와이셔츠		생활티(남여공용)		남자 바지				반바지(남여공용)			
						/					
여자 블라우스		생활티(남여공용)		여자 바지				여자 치마		반바지(남여공용)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세부사항			
원단	폴리/레이온	원단	폴리	원단	울 / 폴리	원단	울 / 폴리	원단	쿨스판		
혼용률	폴리75 레이온25	혼용률	폴리100	혼용률	울 60 폴리 40	혼용률	울 60 폴리 40	혼용률	폴리 93 폴리우레탄 7		
색상	남	흰색	색상	다크네이비	색상	여	남색	색상	지정체크 주름4,A라인	색상	다크네이비 노텍스타일
	여	목부분 치마원단									
단추	남자 5EA 여자 6EA	단추	-단추 3EA -왼쪽가슴: 주머니 1EA (학교마크)	단추	사이즈 조절기 후크 및 지퍼	단추	사이즈 조절기 후크 및 지퍼	단추	사이즈 조절기 후크 및 지퍼		
비고	◎ 치마 및 바지 디자인 가. 치마길이 무릎선 나. 통출이기 금지 ◎ 명찰: 호주머니 형(천 소재), 탈·부착 식(아크릴 소재) 가. 크기: 가로 7cm, 세로 2.5cm 나. 색상(2019학년도 기준): 1학년: 곤색 바탕에 흰색 글씨 2학년: 녹색 바탕에 노랑 글씨 3학년: 자주색 바탕에 노랑 글씨								지퍼타이		
									◎ 디자인 · 왼쪽가슴: 학교마크 · 단 추: 학교마크		
									특이사항		
		명찰부착방법		호주머니 형 탈·부착 식							

별첨2 [학생선도기준]

구분	항목	내용	선도기준						비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1차	2차	3차		
품행 관련	1	용의 복장 규정을 위반한 자	○							
	2	수업 준비, 청소, 기타 등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자	○							
	3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한 자	○							
	4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동조한 자	○	○						
	5	교내봉사의 선도를 받고 같은 규칙을 위반한 자	○	○						
	6	언행과 품행 불량으로 주민에게 진정을 받은 자	○	○						
	7	학교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자	○	○						
	8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선동한 자	○	○	○					
	9	교사에게 언어적 표현수단으로 욕설을 하는 등 교사의 품위를 손상시켜 교권을 손상시킨 자	○	○	○	○	○	○	○	
	10	사회봉사의 선도를 받고 계속 같은 규칙을 위반한 자		○	○	○	○	○	○	
	11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집단 행동할 것을 선동한 자				○	○	○	○	
	12	교권을 모독한 자				○	○	○	○	
	13	품행이 불량하여 개선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	○	○	
	14	재학 기간 중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				○	○	○	○	
	15	특별교육 이수 처분을 받은 후 동일 학년에서 재차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자				○	○	○	○	
	16	교사에게 신체적 또는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한 자							○	
준법 관련	17	교문이외의 장소로 출입하거나 담을 넘어다니는 자	○							
	18	학생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19	오토바이를 운전하거나 동승한 학생 등하교 시 또는 정규 교육과정 운영 시에 차량을 운전한 학생 또는 전동 장비를 운전한 학생 * 전동 장비 :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 등	○	○						
	20	범죄행위로 인하여 경찰에 연행된 후에 훈방된 자	○	○						
	21	부정행위 및 이를 방조한 학생(해당과목 "0"점 처리)	○	○						
	22	도박 또는 도박과 유사한 행위를 한 학생(판치기 포함)	○	○						
	23	불법 취업을 한 학생	○	○						
	24	공공기관 홈페이지나 사이버상에서 폭언이나 타인의 인격을 모독한 행위 또는 물의를 일으킨 자	○	○	○					
	25	불건전한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동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					
	26	불건전한 영상, 동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	○					
	2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자		○	○					
	28	불법 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자		○	○					
	29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출연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구분	항목	내용	선도기준						비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1차	2차	3차		
	30	불법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복제하여 판매한 자		○	○					
	31	공문서를 위·변조하여 불순한 목적에 사용한 자	○	○	○	○	○	○	○	
	32	선도 중 선도 지도에 불응한 자		○	○	○	○	○	○	
	33	사법기관에 유죄로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			○	○	○	○	○	
	34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자				○	○	○	○	
	35	학교 질서를 문란시킬 목적으로 학생들의 집회를 꾀한 자				○	○	○	○	
수업 관련	36	교육적 목적외에 수업시간에 휴대폰을 사용한 학생(문자보내기, 통화하기 등)	○							
	37	다음과 같이 학습태도가 불량하며 수업 및 학습활동을 방해하는 자. (수업준비 미흡, 교실입실 지참, 잠자거나 엎드려 있는 행위, 화장하는 행위, 교사의 허락 없이 자리를 이동하거나 돌아다니는 행위, 음식물을 먹는 행위, 교사의 지도에도 계속해서 주변 학우와 떠들거나 잡담하는 행위, 수업과 관련 없는 내용을 계속하여 질문하는 행위, 기타 수업활동 방해에 상응하는 행위 등)	○							
	38	교사 중 부정행위를 하거나 모의에 가담한 자 (해당과목 '0'점 처리)	○	○						
	39	수업을 방해하고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는 자	○	○						
	40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에 불응하거나 선동한 자	○	○	○					
	41	수업 또는 시험을 거부하거나 주동한 자	○	○	○	○	○	○	○	
	42	시험 문제를 누설하거나 절취한 자		○	○	○	○	○	○	
	43	등교 거부를 주동한 자		○	○	○	○	○	○	
근태 관련	44	결과, 조퇴, 외출을 무단으로 행한 자	○							
	45	시험기간 동안 미인정 결시를 한 자	○	○						
	46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과 미인정지각이 월9회 이상인 자 (단, 46항부터 49항까지 동일하게 미인정결석 1회는 3회, 미인정지각 1회는 1회로 산정하여 적용한다.)	○	○						
	47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과 미인정지각이 월15회 이상인 자		○	○					
	48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과 미인정지각이 월21회 이상인 자			○	○	○	○		
49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인정결석과 미인정지각이 월27회 이상인 자				○	○	○	○		
약물 흡연 관련	50	음주, 흡연을 행한 자	○							
	51	음주 및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 등을 사용한 자		○	○	○	○	○	○	
	52	다른 학생에게 음주 및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 등을 강권한 자			○	○	○	○	○	
	53	음주, 흡연(전자담배 포함)으로 적발된 자와 관련 물품 소지자를 포함하여 학년 단위로 누계하여 적용 함. 1회적발: 교내봉사 3일 2회적발: 교내봉사 5일 3회적발: 사회봉사(학부모 동행, 확인서 제출) 4회적발: 특별교육이수(학부모 동행 확인서 제출) 5회적발: 출석정지 (1회 최대 10일, 연간 3회)	○	○	○	○	○	○	○	

구분	항목	내용	선도기준						비고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출석정지				퇴학
						1차	2차	3차		
풍기 문란 관련	54	유해업소에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한 자	○							
	55	품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자	○							
	56	무단가출하여 학교에 누를 끼친 자	○	○						
	57	불량 서적(음란서적)을 소지, 탐독한 자	○	○						
	58	불량 비디오 및 녹음테이프를 시청취한 자	○	○						
	59	학생출입 금지 장소를 상습적으로 출입한 자	○	○						
	60	채팅 원조 교제를 한 자		○	○					
	61	기타 법령 또는 청소년이나 아동에게 금지하는 행위로 규정되었거나 판단되는 행위를 한 자		○	○					
62	교내외에서 이성 또는 동성과의 접촉 및 교제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사이버 공간 포함)	○	○	○						
금품 절취 관련	63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						
	64	단순 절도를 하거나 공모, 방조한 자	○	○						
	65	절도 사건으로 사법기관의 형을 받은 자			○	○	○	○	○	
	66	상습적으로 절도를 하거나 공모, 방조한 자			○	○	○	○	○	
단계별 선도위반	67	교내봉사의 선도를 받고 계속 같은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도를 거부한 자	○	○	○					
	68	사회봉사의 선도를 받고 계속 같은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도를 거부한 자		○	○	○				
	69	특별교육이수 이상의 선도를 받고 계속 같은 규칙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선도를 거부한 자			○	○	○	○	○	

2. 학생자치회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회는 학생의 특기 신장과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여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회는 용문고등학교 학생자치회라 한다. 이하 “학생회”라 칭한다.

제3조【회원】 임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휴학 또는 일정기간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임원의 자격을 정지한다.

제4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회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학생회는 학생복지와 관련된 학교정책결정 과정에 학생회이나 대의원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금지활동】 학생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하여는 활동을 할 수 없다.

제6조【기능】 학생회에서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① 이회는 제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1. 학예, 체육 특기 및 취미 신장에 관한 활동
2. 정서함양 및 심신훈련을 위한 활동
3. 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4. 각종 봉사활동
5. 학교 또는 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재 및 지원활동
6. 기타 학칙과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② 이 회의 모든 활동은 교칙과 이 회칙의 범위 내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게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1인
- ② 각부의 부장 1인, 차장 1인

제9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둘 수 있으며, 명칭이나 부서를 증감할 수 있다.

- ① 기획·운영부: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사항, 학생회 활동 정리 및 평가주관, 학생 자치회 선거 업무 주관
- ② 문예·학습부: 학습능력 활성화를 위한 방안 모색, 교내외 문예, 예술 활동 등 축제 주관 및 교내외 대외 참가에 관한 사항, 각종 캠페인 활동 주관
- ③ 문화·체육부: 문화 및 학생 심신단련에 관한 사항, 스포츠 관련 취미 및 오락 등 지원 관련 사항, 교내 체육대회 주관
- ④ 바른생활지도부: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예절생활 및 기초질서 준수에 관한 사항, 학교 교칙홍보 및 바른생활 정착을 위한 활동, 학교 기강 확립 구축을 위한 사항
- ⑤ 급식·봉사부: 급식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봉사활동 증진 방안 모색, 대민 지원 사업
- ⑥ 보건·환경부: 학생 보건활동 지원 및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환경보호 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⑦ 홍보부: 학교 내의 교육활동 및 학생 자치활동의 제반 사항 홍보 (학교신문 활용), 학교홈페이지 활성화 활동

제10조【직무 및 선출】

- ① 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②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회장 및 부회장 선거(연합 후보제)는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2. 각 부장 및 차장은 공개전형(서류심사 및 면접)으로 선발한다.

제11조【임기】 이 회의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에 징계처분을 받는 자는 그 직에서 해임되거나 징계의 경중과 반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그러하지 않을 수 있으며, 1개월 이내에 잔여 임기에 대한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다. 단 회장이 당선 후 3월 이내에 징계에 의해 유고시 1회 공고 후 직접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간선제로 선출한다.

제2장. 대의원회 및 집행위원회

제12조【목적】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 ① 회장, 부회장, 각부 부장과 차장, 각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 지도부원으로 구성한다.
- ② 학급의 회장과 부회장은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③ 의장은 회장이 된다.

제14조【기능】

- ①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 결과 보고의 승인
- ② 예산심의
- ③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④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심의
- ⑤ 기타 필요한 사항

제15조【회의】

-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학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3이상 또는 집행위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 ③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④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16조【집행위원회】

- ① 구성 : 회장, 부회장 및 각부의 부장 및 차장으로 구성한다.
- ② 기능
 1. 대의원회의에서 위임된 사항
 2. 사업계획
 3.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
 4. 기타 중요한 의안

제17조【회의】 집행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가지며 학생인권부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3장. 학생회 선거 규정

제18조【목적】 이 규정은 학생이 스스로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본교 학생 자치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임원 선출】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하는 전교 학생회 임원은 학생회장 1명, 부회장 1명이며 연합후보제(러닝메이트)로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제20조【선거관리위원회】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 ① 학교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집행위원 중 7명을 선임한 후 선거계획에 공고한다.
- ② 학교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공고일로 부터 선거가 끝날 때까지로 한다.
- ③ 학교선거관리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④ 학교선거관리위원은 모든 선거관리계획 및 내용을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한다.
- ⑤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1. 투표자 명부 작성(출석부 사본 또는 명렬표를 대신할 수 있다).
 2. 선거계획 공고, 입후보자 공고 및 등록, 선거운동, 부정선거 활동 감시,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당선자 공고
 3.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제21조【선거 시기 및 공고】

- ① 매년 2학기 말에 실시한다.
- ② 선거일 10일 전에 공고한다.

제22조【선거권자】 선거 공고일 현재 본교 재학 중인 학생에 한한다.

제23조【입후보 자격】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다음의 각 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① 선거 공고일 현재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②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며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징계사유가 없는 학생
- ③ 재학 학년 중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생 추천 서명과 교사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24조【입후보 등록】

- ① 입후보하려는 학생은 공고된 선거계획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류제출 기일을 어길 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다.)
 1. 후보자 등록(연합제) 신청서(공약 탑재) 1부
 2. 학생추천서명서 1부(후보자 팀별 선거권자 10% 이상)
 3. 담임교사 추천서 1부
 4.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주첨으로 결정하고 등록 공고한다.
 5. 추천인 서명은 바른 글씨체로 실명 서명을 받아야 하며 후보자별 중복 서명은 금한다.
 6.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강요, 위협, 타 학생의 이름 도용을 하는 행위는 적발 시, 선거법 위반 조항으로 처리된다.
 7. 입후보 등록 후 제25조에 위반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등록 무효를 공고한다.

제25조【선거운동】

- ① 입후보자는 입후보자 등록 후 2일 내에 입후보자 소개 및 공약을 본교 홈페이지(학생 게시판)에 탑재한다.
- ② 선거운동 기간은 입후보등록 공고일로부터 선거일까지로 한다.
- ③ 7명 이내의 선거운동원 및 찬조 연설원 1명을 둘 수 있다.
- ④ 선거운동원 및 찬조연설원의 명단은 학교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선거운동을 하여야 한다.
- ⑤ 홍보 활동 시 후보자, 홍보도우미는 반드시 교복규정을 준수하여야하며, 교복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로 홍보활동을 할 수 없다.
- ⑥ 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1. 수업시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2. 선거관리자에게 음식물, 선물제공 또는 주기로 약속하는 경우
3. 다른 후보 비방 및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경우

제26조【벽보】

- ① 후보자는 기호, 성명, 자기소개와 공약사항들을 기재한 벽보 5매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 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② 벽보의 규격은 길이 60cm, 너비 50cm 이내로 한다.
-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 확인 도장을 찍은 벽보를 승인된 장소에 기호 순으로 붙인다.

제27조【소견발표】

- ① 후보자 및 찬조연설원은 합동 소견발표와 개인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
- ② 합동소견발표 및 찬조연설은 선거기간 중 2회 이내로 하며 후보자 및 찬조 연설원은 각각 5분 이내로 한다.
- ③ 개인 소견발표 및 기타 선거 운동은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28조【투표】

- ① 투표는 1학년,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 ②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 ② 투표 장소는 공고된 선거계획에 따른다.
- ③ 후보자는 참관인 1명을 선정, 그 명단을 선거일 전날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④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고, 잘못이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한다.

제29조【개표】

- ① 개표는 지정된 장소에서 참관인 입회하에 선거관리위원들에 의해 실시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
 1. 지정된 투표용지,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란에도 기표(○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표) 한 것
 4. 어느 란에 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것 (선상에 표한 것)
 5. 그 외 무효표에 대한 내용은 선거관리위원들의 회의로 개표 시 결정하여 처리 한다. (단, 한 명의 후보 투표 선 안에 도장이 여러 번 찍혀있으면 유효 처리한다.)

제30조【당선인 결정】

- ① 선거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② 선거 당선자를 공고문 및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③ 입후보자가 없을 시에는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 연장 후 추가로 지원받으며 이후에도 추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학생자치회위원 회의 심사 및 건의 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 ④ 입후보자가 1팀(연합후보제)일 경우에는 입후보자 등록기간을 3일 연장 후 추가로 지원받으며 이후에도 추가 입후보자가 없을 경우에는 투표 없이 당선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⑤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하나, 임기 중이라도 징계를 받을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선거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고 잔임 기간 동안 재임 한다.
- ⑥ 학생회장이 당선 후 3개월 이내에 징계에 의해 자격상실 시에는 1회 공고 후 직접 선출하며 후보자가 없을 경우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한다.

제4장. 회장·부회장 선거 규정 및 학급회 구성

제31조【목적】 이 규정은 각 학급의 회장·부회장을 공정하게 선출하고 임명된 회장, 부회장이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정수】 각 학급에 회장·부회장을 각 1명씩 둔다.

제33조【후보 자격】 회장·부회장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다음 각 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① 품행이 바르고 지도력이 있는 자로 최근 3개월 이내에 교내봉사 5일 이상의 징계사유가 없는 학생
- ② 학급을 통솔하는데 건강상 지장이 없는 자
- ③ 행실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학생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34조【선거 및 임명 절차】 회장과 부회장은 학급 학생의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선출된 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임명한다.

제35조【선거 시기】 선거는 3월초, 8월말로 하되 학년부의 의견을 참조하여 학생생활인권부에서 결정한다.

제36조【임기】 임기는 학기제로 하되 구성원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37조【보궐 선거】 회장·부회장에 임명된 자가 제33조의 각 호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한다.

제38조【회장의 지위, 임무】

- ①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 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 ② 회장은 담임교사를 도와 학급의 학생들을 통솔하고, 학습 분위기 조성 및 건전한 학급 풍토의 조성 노력한다.
- ③ 회장은 학급의 청결 유지 및 비품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제39조【부회장의 지위, 임무】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학급회 부의장 및 학생회 대의원을 겸임한다.

제40조【기타 임원의 임명】 회장·부회장을 제외한 학급회 임원은 학급회원이 추천하여 학급회의 승인을 받아 담임교사가 임명한다.

제41조【학급회 조직】 학급회 조직으로는 회장, 부회장, 서기, 기획·운영부, 문예·학습부, 보건·체육부, 바른생활지도부, 봉사부, 환경부, 홍보부를 두고, 학교장의 승인하에 부서의 증감, 명칭을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학급회 임원의 임무】 학급회 조직에 따른 회장 및 각 부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① 의장(회장) : 학급회 의장, 학급통솔, 출석파악, 교과시간 및 집회 시 인원보고, 담임교사의 지시 사항 전달, 교실환경 구성, 학습 분위기 조성, 학급회 대의원 업무 등에 관한 일
- ② 부의장(부회장) : 의장 유고 시 의장의 역할을 대행함
- ③ 학급회 부서 및 운영 (학급회 부서장은 학생회 부서와 연계하여 활동한다.)
 1. 기획·운영부: 학급의 특정행사 추진 및 학급회의의 효율적 운영 및 조정, 학생회 기획·운영부와 연계 활동
 2. 문예·학습부: 학급의 교과수업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지원, 학급문예, 예술활동 지원 및 축제 지원, 학생회 문예·학습부와 연계 활동
 3. 문화·체육부: 학급, 학년, 학교 체육대회 및 단합 증진과 문화활동, 학생회 문화·체육부와 연계 활동
 4. 바른생활지도부: 학급 생활규범 준수 점검 및 교내외 학교 교칙에 위반하는 학생 선도와 학교 기강 확립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학생회 바른생활지도부와 연계활동
 5. 급식·봉사부: 급식 및 각종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학생회 급식·봉사부와 연계활동
 6. 보건·환경부: 학생 건강 및 학급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환경보호 활동, 교내외 환경정화 활동, 학생회 보건·환경부와 연계활동
 7. 홍보부: 학급의 교육활동 및 학급 자치활동의 제반 사항 홍보, 학급 홈페이지 활성화활동, 학생회 홍보부와 연계활동

제43조【학급회 활동내용】 학급회 활동은 협의활동과 위원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항과 같다.

- ① 협의활동
 1. 위원조직과 활동계획 수립
 2. 학급생활 개선
 3. 학급내의 생활규칙 마련
 4. 학급환경정리

5. 학예·보건·체육·레크레이션·보고회·계절행사·교우관계·생활반성·근로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급계획 수립
6. 학급행사 학년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② 위원활동

1. 게시·위생·도서·수집·비품·음료수·미화·청소·안전·질서·봉사관리의 책임을 수행하는 위원활동
2. 교과학습, 학예, 체육회 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3. 수시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

제44조【학급회의 진행 순서】

- ① 개회사(의장)
- ② 국민의례(국기에 대한 경례, 애국가 제창,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 ③ 출석점호(부회장)
- ④ 의장인사 및 지난주 반성(의장)
- ⑤ 회의주제 제시(의장)
- ⑥ 주제 토의
- ⑦ 기타토의
- ⑧ 건의 및 희망사항
- ⑨ 담임교사 지도조언
- ⑩ 교가제창
- ⑪ 폐 회

제45조【정족수 및 의결】 학급회의 의결정족수는 학급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단 위원의 선출방법은 무기명 투표에 의한다.)

제46조【학급회 진행상의 유의사항】 학급회의 진행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한다.

- ① 토의문제에 대하여 공동의식을 가진다.
- ② 토의의제는 학급회 개최전일 종례시간에 사전 발표한다.
- ③ 토의의제는 사전에 지도교사의 조언을 받아 충분히 검토한다.

제5장. 학생자치회 규정 제·개정

제47조【회칙 개정】 학생자치회 규정에 대한 개정은 다음 각 항과 같이 한다.

- ① 회칙의 개정은 대의원 1/2이상의 찬성 또는 집행위원 1/2이상의 요청으로 발의하고 대의원회에 회부한다.
- ② 이 개정안은 대의원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 이 규정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 이 규정은 제77조 6항 6을 삭제하여 2005년 3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제3조【개정】 이 규정은 제18조 1항 용의사항 중 두발규정을 개정하여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개정】 이 규정은 제23조 3항 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 내용을 개정하여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개정】 이 규정은 제18조 2항 (1)두발규정, 4항 (3)복장규정의 내용을 개정 하고, 제42조 2항 임원선출 성적 규정을 삭제하여 200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개정】 이 규정은 제44조 대의원회구성 규정에 2항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2008년 0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개정】 이 규정은 제8조 학생선도심의위원회 2항 내용을 개정하고, 제77조 3항 7호, 4항 7호, 5항7호의 내용

을 삭제 개정하여 2009년 0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개정】 이 규정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에 따라 제3조, 제8조 개정, 제18조 1항 2호 개정 및 삭제, 4호,6호 개정, 7호및 8호삭제, 9호삭제개정, 제32조 4항 삭제개정, 제58조 개정, 제59조 및 제60조 삭제, 제77조 6항4호 삭제 개정, 제85조 삽입 개정하여 2010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개정】 초등교육법 시행령 개정(2011.3.18)에 따라 제3조, 제8조,제58조, 제67조, 제72조의 일부내용을 삽입 개정하여 2011년 5월27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개정】 이 규정은 2015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개정】 2016년 08월 24일 학교폭력 관련 내용으로 [별첨2] 학생선도기준의 10항, 64항, 65항, 66항, 69항을 삭제함. 이 규정은 2016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은 제42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내용 내용을 개정(선도의 단계적 적용 내용 추가)하고, 2017년 0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3조【개정】 이 규정 제14조의 용의사항과 별첨 #2 학생선도기준 37항, 46항, 47항, 48항, 49항, 53항을 수정하고,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개정】 이 규정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미인정 결석, 미인정 지각,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학생징계조정위원회 회로 용어를 전체적으로 변경하고, 제 27조 8항, 제 28조, 제 31조 1항, 2항, 3항, 4항, 제 47조 2항, 3항, 4항, 5항을 학업성적관리규정과 동일하게 변경 및 추가하고, 제42조 선도의 종류와 기간 내용을 변경 및 추가(학생생활교육위원회 지침 상한선 변경)하여 2019년 05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개정】 이 규정 제 47조 선도의 세부사항 1항 학교내 봉사 또는 사회봉사 중 오토바이 승차에 대한 내용을 변경하고, 차량 및 전동 장비 운전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2019년 07월 05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개정】 교육청의 인권규정 점검 결과 특별교육기간 명시, 서면 통보 등의 변경 요청으로 수정하고, 규정 제2장, 제3장, 제4장의 내용을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운영 절차에 준하여 내용을 추가 및 편집하여 2019년 0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개정】 문화체육부, 급식·봉사부, 보건·환경부로 용어를 변경하고, 이 규정 제 42조 서기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여 2020년 5월 25일부터 제·개정하여 시행한다.